

오카야마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사태조치

- ① 구 역 오카야마현 전지역
- ② 요청기간 6월1일 (화) ~6월 20일 (일)

현민 여러분에게

【특별조치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것】

- 낮을 포함하여 불요불급의 외출·이동은 자제하기
- 감염대책을 철저히 하지 않는 음식점 등, 휴업요청 또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은 엄중히 자제하기
- 다른 현으로의 불요불급의 왕래는 적극적으로 자제하기
- 혼자 먹기! 먹을 땐 말 없이! 회화 때는 마스크를 착용 등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기
- 노상, 공원 등에서 집단으로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은 하지 말기

【특별조치법 제24조 제 9항에 근거한 것】

-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열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이용하고 있는 병원 등에 진료를 받고, 통근, 통학, 외출 등을 하지 말기
- 많은 사람이 모인 바비큐, 지역에서의 모임과 회식, 노래방은 자제하기
- 「새로운 생활양식」의 실천을 철저

● 음식점 등에 요청(현 내 전지역)

기간	2021년6월1일 (화) ~6월 20일 (일)
대상시설	<p>【음식점 등】 음식점 또는 카페 등 (테이크 아웃, 배달은 제외)</p> <p>【유흥시설】 접대를 하는 음식점 등, 식품위생법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</p> <p>【결혼식장】 결혼식장</p>
실시내용	<p>(특별조치법 제45조 제 2 항에 근거함) 명령, 과태료 규정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영업시간을 단축 (평소 영업시간이 20시를 넘는 점포는 영업시간을 5시~20시 까지로 단축) ○주류 또는 노래방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(주류 및 노래방설비를 제공(이용자가 주류를 가게로 반입하는 경우 포함)을 중지한 경우는 제외) 은 휴업요청 ○마스크 회식의 실시를 널리 알리고,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이용자는 입장을 금지(퇴장포함) ○아크릴판, 가림막 설치나 좌석의 간격을 확보 등 비말(침방울이 튀는 것)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 ○손 소독위한 설비 설치, 종업원에게 검사를 권장, 입장자의 점포내 질서 유도, 발열 등의 유증상자의 입장금지, 사업소의 소독, 시설 환기 등,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조치 <p>(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에 근거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업종별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철저히 <p>※결혼식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(1.5시간 이내)으로, 되도록 적은 인원수(50명 또는 수용정원의 50%로 둘 중 적은 쪽)로 개최를 바랍니다.</p>

➤ 모임행사의 개최 제한에 관련한 시설은 이벤트 개최요건을 지킬 것. (특별조치법 제 24조 제 9항에 근거)

※ 인터넷 카페·만화카페 등 야간에 장기체제 목적의 이용자가 상당할 정도로 예상되는 시설은 영업시간의 단축요청의 대상 외입니다만, 손님 입장 때 인원수를 정리, 주류 또는 노래방설비의 제공정지를 요청